

---

“완도 별바다, 치유/문화 청소년플랫폼”  
건축설계공모

공모지침서

---

2021. 08.



## <목 차>

### I. 설계 공모 규정

1. 공모 배경 및 목적 .....	1
2. 공모 개요 .....	1
3. 참가자격 .....	2
4. 공모일정 .....	2
5. 참가등록 .....	3
6. 질의 및 회신 .....	4
7. 심사위원회 .....	4
8. 심사결과 발표 .....	7
9. 저작권 .....	7
10. 계약 .....	8
11. 설계진행 .....	8
12. 사업의 변경 및 해지 .....	9
13. 분쟁 .....	9

### II. 제출 및 작성

1. 제안서 제출 .....	10
2. 제안서 작성기준 .....	10
3.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.....	12

### III. 설계공모 지침

1. 대상지 현황 .....	13
2. 건축계획 .....	20
3. 건축설계지침 .....	22
4. 심사기준 .....	24
5. 심사방법 .....	25
6. 제공자료 .....	26

# I. 설계 공모 규정

## 1. 공모 배경 및 목적

### (1) 배경

- 완도문화원의 신축이전으로 (구)완도문화원은 기피된 폐시설로 변이
- 완도군 내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장소가 전무한 상황
- 원도심 지역은 좁고 계단형 골목이 많아 어르신들의 불편과 위험 초래
- 수년 동안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상태

### (2) 목적

- 소외된 지역의 문화거점공간 조성
  - 교육복지 사각지대, 완도읍과 섬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거점 조성
  - 청소년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힐링문화거점 조성
- 기피된 폐시설을 활용한 안전지대 거점
  - 불안전 위험공간인 (구)완도문화원을 밝고 건전한 청소년 안전지대로 변화
  - 불편하고 위험한 좁은 계단형의 골목을 건강한 안전지대로 변화
-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 거점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구축
  - 문화예술과 전시체험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힐링공간으로 조성
  -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콘텐츠와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

## 2. 공모 개요

### 2.1. 개요

- (1) 공모명칭 : 완도 별바다, 치유/문화 청소년 플랫폼 건축설계공모
- (2) 대지위치 :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길 3-2(지번주소 : 군내리 791) 일원
- (3) 발주기관 :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(Tel. 061-550-5603, E-mail. [jjh1120@korea.kr](mailto:jjh1120@korea.kr))
- (4) 건축개요

구 분	내 용
대지면적	33,184㎡(치유/문화 청소년 플랫폼 1,162㎡, 별빛공원 32,022㎡)
건축규모	지상 3층, 연면적 1,337.75㎡, 건축면적 448.02㎡, 건폐율 38.56%, 용적률 115.12%
용도	노유자시설, 제1종근린생활시설
시설개요	청소년 힐링 센터, 청소년 감성 놀이터, 주민사랑방, 사무실 등

- (5) 총사업비 : 3,800백만 원 (부가세 포함)

※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, 토목, 조경, 기계설비, 전기, 통신, 소방, 폐기물 처리, 기존시설 철거비(석면 등) 등에 대한 총 비용임

※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(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- (6) 설 계 비 : 184.39백만 원 (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로 포함)

※ 건축, 토목, 조경, 기계, 전기, 통신,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비용

※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, BF 예비인증(일반등급), 조감도, 인·허가 소요비용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

- (7) 설계기간 : 착수일로부터 4개월(공휴일 포함)

## 2.2. 공모 홈페이지

‘완도군청’(www.wando.go.kr)(이하 “홈페이지”)

## 3. 참가 자격

- (1)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소지자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.
  - ※ **공고일 기준**으로 등록취소, 휴업, 폐업, 업무정지, 자격정지, 부정당업체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 불가
- (2)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.
- (3)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고 출자비율이 과반이어야 하며, 공동응모자는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.
  - 공동응모 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및 응모 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.
  -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4. 공모 일정 (안)

### 4.1. 공모일정

구 분	공모 일정	비 고
공고	2021. 08. 06.(금)	나라장터,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고
참가 등록	2021. 08. 06.(금) ~ 2021. 09. 06.(월)	E-mail : jjh1120@korea.kr
질의 접수	2021. 08. 06.(금) ~ 2021. 08. 20.(금)	E-mail : jjh1120@korea.kr
질의 회신	2021. 08. 25.(수)	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
작품 접수	2021. 10. 08.(금)	-
작품 심사	2021. 10. 13.(수)	-
심사결과 발표	2021. 10. 14.(목)	완도군청 홈페이지 게시

※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, 제공자료로 대체한다.

### 4.2. 유의사항

- (1)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근무일, 업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이메일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(www.wando.go.kr)를 통해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.
- (3) 공모 기간 중 응모자 소재지 주소,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,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.

## 5. 참가등록

- (1) 등록방법 : 이메일 접수
- (2) 등록기간 : 공모일정(표) 참조
- (3) 이 메 일 : jjh1120@korea.kr
- (4) 구비서류

구분	내용	비고
서식 1	설계공모 응모신청서	대표자
서식 2	대표자 선임계	대표사에 건축사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
서식 3	설계공모 참여자 명단	
서식 4	공동응모협정서	공동응모 시
서식 5	청렴서약서	대표자
서식 6	사전접촉 금지 서약서	대표자•공동응모자 각각 작성
서식 7	위임장 및 재직증명서	대리인 제출 시
서식 8	사용인감계	

### (6) 유의사항

- 참가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.
- 참가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, 재공고 후에도 참가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.
-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중복으로 등록하거나 단독으로 등록 후 공동으로 제출하는 참가등록자는 설계공모 참가 자격을 박탈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.
- 모든 증빙자료는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, 당선발표 이후라도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실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실격처리 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,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- 공모 과정 및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에 대한 누설을 금지한다.
-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524호),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.
- 당선자가 거짓서류의 제출, 기 제출안의 제출,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- 미자격자가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.

## 6. 질의 및 회신

### 6.1. 질의 접수

- (1) 제출방법 :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, 제공 문서, 기타 공모의 진행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서 [서식 9] 작성 후 E-mail로 제출
- (2) 접수일 : 공모일정(표) 참조
- (3) 이메일 : jjh1120@korea.kr
- (4) 유의사항
  -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(팀)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, 개별 회신은 하지 않는다.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
### 6.2. 질의 회신

- (1) 일시 : 공모일정(표) 참조
- (2) 회신방법 : 완도군청 홈페이지(www.wando.go.kr)
- (3) 유의사항
  -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,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  -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,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,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7. 심사위원회

### 7.1. 심사위원회 구성

- (1)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「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196호)」에 의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(2) 심사위원회 명단 (가나다순)

번호	성명	소속	분야
1	김남욱	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	토목시공
2	노승범	한양대학교 건축학부	건축계획
3	오명호	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	건축구조
4	오세규	전남대학교 건축학부	건축계획
5	유영찬	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	건축시공
6	유창균	목포대학교 건축학과	건축계획

### 7.2. 심사위원회 운영

- (1)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, 최초 회의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.
- (2)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고, 심사를 진행하며,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세부 심사방식 및 수상작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. 또한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.
- (3)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하고,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4) 참석 심사위원이 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.

### 7.3. 심사 방법

- (1)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.
- (2) 심사위원회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(3)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(4)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.
- (5)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,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,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- (6) 발주기관 등(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)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.
- (7)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제안서가 5개 미만일 때는 당선작 또는 우수작까지만 선정할 수 있다.
- (8) 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(9) 공모 작품 수에 따라 심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
### 7.4. 평가 기준

- (1) 평가내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,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(2) 평가항목 및 분야별 배점

평가항목	배 점	세 부 평 가 기 준
배치 계획	20	○배치 및 토지 활용도 ○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○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
공간 계획	30	○내·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○공간 이용의 효율성 ○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
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	30	○주변 공간·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○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○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
기술 계획	15	○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○비용 절감 등 경제성 ○구조의 보강 및 공법 등의 적절성
기타	5	○공공성 제고방안,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

※ 제출된 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하고,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점수에 반영한다.

### (3) 실격 및 감점 기준

위반내용	실격 및 감점기준	감점한도
○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	실격(심사제외)	
○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(단, 제안서 15부 중 1부는 제외)		
○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 (직·간접적인 청탁, 압력 포함)를 할 때		
○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		
○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, 통화하여 공모안을 설명을 한 경우		
○공모안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한 경우		
○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또는 타인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		
○상기 실격기준 외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		
○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	0.5점/항목 당	3점
○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	0.5점/쪽 당	3점
○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형식 위반 시	0.5점/항목 당	3점
○제출부수 부족 또는 초과 시	0.5점/부수 당	3점

※ 실격 및 감점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및 평가에 반영함

### 7.5. 기밀유지

- (1)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심사내용을 녹음·녹화·녹취록으로 작성 보존한다.
- (2)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,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3) 심사 전 심사위원의 '사전접촉 여부 확인서'를 징구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 등을 시도한 업체를 실격 처리한다.

### 7.6. 심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
- (1) 심사위원이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.
 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-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위원이 심사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(대리관계 포함)가 되는 경우
  -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 -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심사 대상 업체에 임·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
  -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 포함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- (2) 제척 일정은 심사위원 공개 시 별도로 통보한다.
- (3)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,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여 기피신청[서식 16]을 할 수 있다.
- (4)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되면 회피신청서[서식 16]를 제출하고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(5)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## 8. 심사결과 발표

### 8.1. 심사결과 발표

- (1) 발표일시 : 공모일정(표) 참조
- (2) 발표방법 : 입상자에게 서면 통지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게시

### 8.2. 입상자 선정

제안서 제출자	순 위	자 격	보 상 금
5인 이상	1	당선작	실시설계권 부여
	2	우수작	4,000천원
	3	가작	2,000천원
4인	1	당선작	실시설계권 부여
	2	우수작	4,000천원
3인 이하(입상작 없음)	1	당선작	실시설계권 부여

- (1) 1등 당선자는 설계용역 권리가 부여되며 기타 입상작의 보상은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한다.
- (2)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한다.

### 8.3. 유의사항

- (1)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금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(2) 공동응모의 경우 입상자에 대한 포상은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지급한다.
- (3) 입상자 이외의 접수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(4) 주최자는 1등 당선자가 우선협상권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, 협의를 통하여 후 순위자 순으로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(5)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  
※ 단, 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할 수 있다.
- (6)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으며, 그 외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.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,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,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## 9. 저작권

- (1) 공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(팀)에게 있으며,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.
- (2)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아래와 같다.
  - 제출 작품의 저작권은 제출자에게 있으며,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주최자가 공모작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 출판,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, 방송,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인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.

-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.(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)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,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.
- (3) 참가작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설계(안)에 이용할 수 있다.

## 10. 계약

- (1)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에 따른다.
  - ※ 계약 체결 시 낙찰률 등에 의한 감액이 있을 수 있다.
- (2)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,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- (3) 당선자는 전기·소방·정보통신 등 해당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(분담이행)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계약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전기분야 :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종1종 이상 등록자
  - 소방분야 :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(전기과 기계분야 모두 포함) 등록을 필한 업체,
  - 정보통신분야 :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
- (4)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내용서 또는 지침을 따른다.

## 11. 설계 진행

- (1) 본 설계공모는 당선자는 진행과정 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한다.
- (2)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,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(3)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경관심의, 기술심의, 건축인허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,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(4) 관련법에 따른 심의 인·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기관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, 납품 이후 각종 인·허가 변경,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한다.
- (5) 납품 후에라도 발주처의 사정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의 수정,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12.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

- (1)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의 정책 변경, 심의 미통과,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·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(2) 이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13. 분쟁

설계 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.

## II. 제출 및 작성

### 1. 작품 제출

- (1) 제출일시 : 공모일정(표) 참조
- (2) 제출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)
- (3) 제출도서

번호	제출도서	내용	수량	비고
1	설계패널	A1 2매	1부	세로방향, 2매 1식
2	설계설명서	A3 20매 이내	15부	가로방향, 1부만 업체명 표기
3	USB		1개	PDF

#### (4) 제출서류

구분	내용	비고
서식 10	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	대표자

※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는 해당 시 제출한다.

#### (5) 유의사항

- 참가자는 마감시간까지 제출도서를 전부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.
- 제출물은 설계패널·설계설명서·제출서류로 나누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포장한다.
- 제출도서는 수정, 변경, 보완, 추가제출, 열람 등을 할 수 없다.
- 제출도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할 수 있다.
- 참가자는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당선작 선정전까지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.

## 2. 제안서 작성기준

### 2.1. 공통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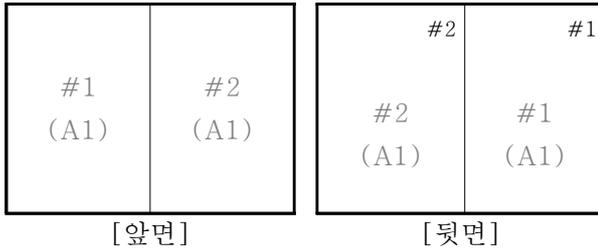
- (1) 제출도서의 종이는 무광택 백상지로 하며, 단면인쇄를 기본으로 한다.
- (2) 제출도서의 글씨체는 국문은 ‘맑은고딕’, 영문은 ‘Arial’로 작성한다.
- (3) 제출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, 미터법(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)을 사용한다.  
단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한다.
- (4) 제출도서에는 참가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, 표식, 기호 등이 표기 되서는 안 된다.
- (5) 축적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.
- (6) 형식은 자유이며 모든 제출도서의 컬러 및 3D 표현을 허용한다.
- (6) 설계설명서·기술평가도면은 심사용 14부와 보관용 1부로 구분하여 제출하며, 보관용 1부의 표지에만 대표 건축사사무소명과 대표자명을 기재·날인한다.

※ 심사용 14부에 업체명 표기 시 실격처리 한다.

### 2.2. 제출도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

- (1) 설계패널
  - 규격 : A1(594mm × 841mm), 세로방향, 2매 1식
  - 두께 10mm 압출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.

- 자유롭게 구성하되, 배치도와 주요 평면도는 1/\*00으로 표현한다.
- 패널 배열은 단면이 가로가 되게 하여, 좌우로 나란히 전시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한다.
- 패널 뒷면 우측 상단에 패널 번호를 표시한다.



(2) 설계설명서

○ 표현형식

- ① 표지 : A3(420mm × 297mm), 200g 이내의 백색아트지 (서식 11 사용)
- ② 규격 : A3(420mm × 297mm), 백상지 80g
- ③ 매수 및 부수 : 20매 이내(앞·뒤 표지, 목차, 간지 포함), 15부
- ④ 제본 : 가로방향 좌편철, 무선제본(링, 와이어 사용금지), 단면인쇄
- ⑤ 쪽번호 : 표지 다음 쪽부터 우측 하단에 “1”부터 표기

○ 표현내용

순서	항목	세부사항	페이지 수
1	표지	앞면, 뒷면(내용 없음), 서식 11	2p
2	목차		1p
3	조감도(투시도)		1p
4	설계개요	서식 12, 서식 13	1p
5	대지현황분석		1p
6	배치계획		1p
7	개념도	설계개념 및 설계방향	1p
6	도면	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	2p ~ 4p
7	구조계획		1p
8	조경계획		1p
9	인테리어계획		1p
10	색채계획		1p
11	설비계획	기계, 전기, 소방, 통신 등	1p
12	인증계획	녹색건축물, 에너지효율, 신재생에너지, BF계획 등	1p
13	기타사항	신기술, 신공법, 신소재 등	1p
14	법규검토	관련법규, 서식 14	1p
15	공사비	산출내역서, 서식 15	1p
합계			총 20p

### 3.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#### 4.1. 기타 유의사항

- (1) 심사과정에서 별도 발표 및 면접이 없으므로 심사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글자크기 사용 및 개념도 활용하여 표현한다. (한글 기준 12포인트 이상)
- (2) 제출도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기관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## 4.2.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

- (1) 제출물에 대한 익명성 확보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유지된다.
- (2) 제출도서에는 심사번호(별도 추첨)만 기재하여 익명 관리하고, 업체명이 있는 도서 1부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는다.
- (3) 제출도서에는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참가자 임의의 고유번호도 표시하지 않는다.(표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)
- (4)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다.

### Ⅲ. 설계공모 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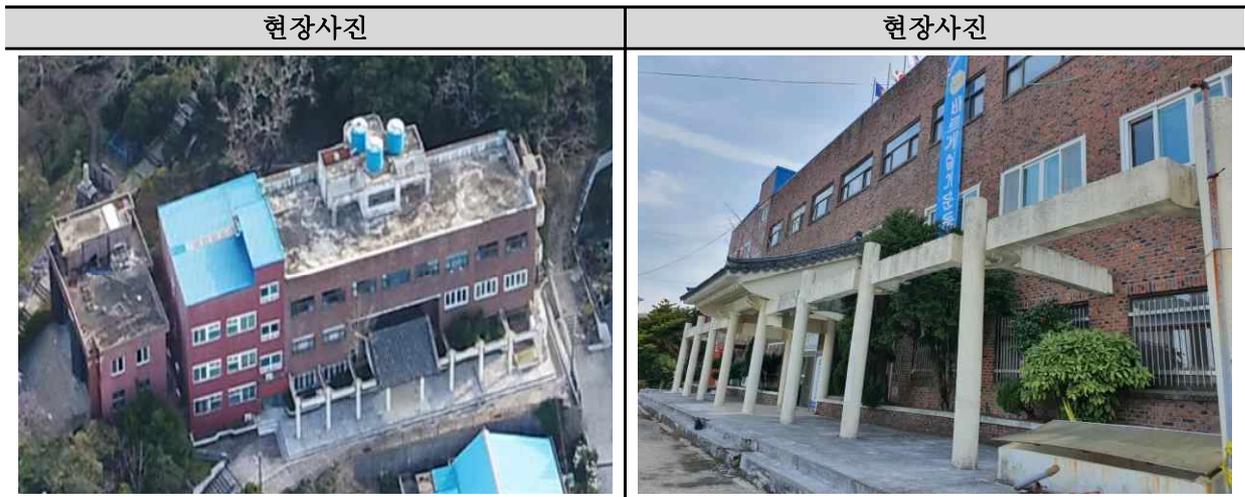
#### 1. 대상지 현황

##### 1.1. 대상지 개요

###### (1) 대상지 위치



###### (2) 대상지 사진



##### 1.2. 대상지 연혁

- (1) 1991년 12월 24일 허가 후 본관이 준공되고 1995년 3월 15일 별관이 준공되었다.
- (2) 건물 내 방수문제로 인한 누수, 결로 문제로 문화원이 소장했던 많은 서적과 기록물 등이 곰팡이 피해를 입어, 2014년 4월 완도군 가용리 부지로 이전하였다.
- (2) 진입도로가 협소하고, 경사지에 위치하여 장애인 및 아동의 접근성이 떨어지고, 차량진입이 불가하다.
- (4) 현재 별관은 완도군 관사로 사용 중이며, 본관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사무실이 있다.

### 1.3. 입지현황

#### (1) 위치 및 면적

- 완도는 동경 126°15′~127°13′, 북위 33°54′~36°08′에 있다. 동쪽은 바다 건너 고흥군·여천군, 서쪽은 해남군, 북쪽은 해남군·강진군·장흥군과 마주하며, 남쪽은 제주, 남해에 면한다.
- 한국 6대 도서(제주도, 거제도, 진도, 강화도, 안면도, 완도) 중의 하나로 남해안 해상교통의 중심지이다.
- 군내리에 위치한 대상지는 완도 진입부에서 섬 안쪽으로 17km 거리에 위치하고, 뒤로는 서망산이 있으며 전면 바다에 문화재보호구역인 ‘주도’가 있다.
- 대상지 서쪽에 완도읍 가용리, 남쪽에 완도읍 망석리, 동쪽으로는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신지도, 북쪽으로는 장흥군과 연결된 고금도가 위치한다.
-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총 33,184㎡으로 “치유/문화 청소년플랫폼”이 1,162㎡, “별빛공원”이 32,022㎡이다.

완도군 내에서의 위치



주변 도시 입지현황



(2) 접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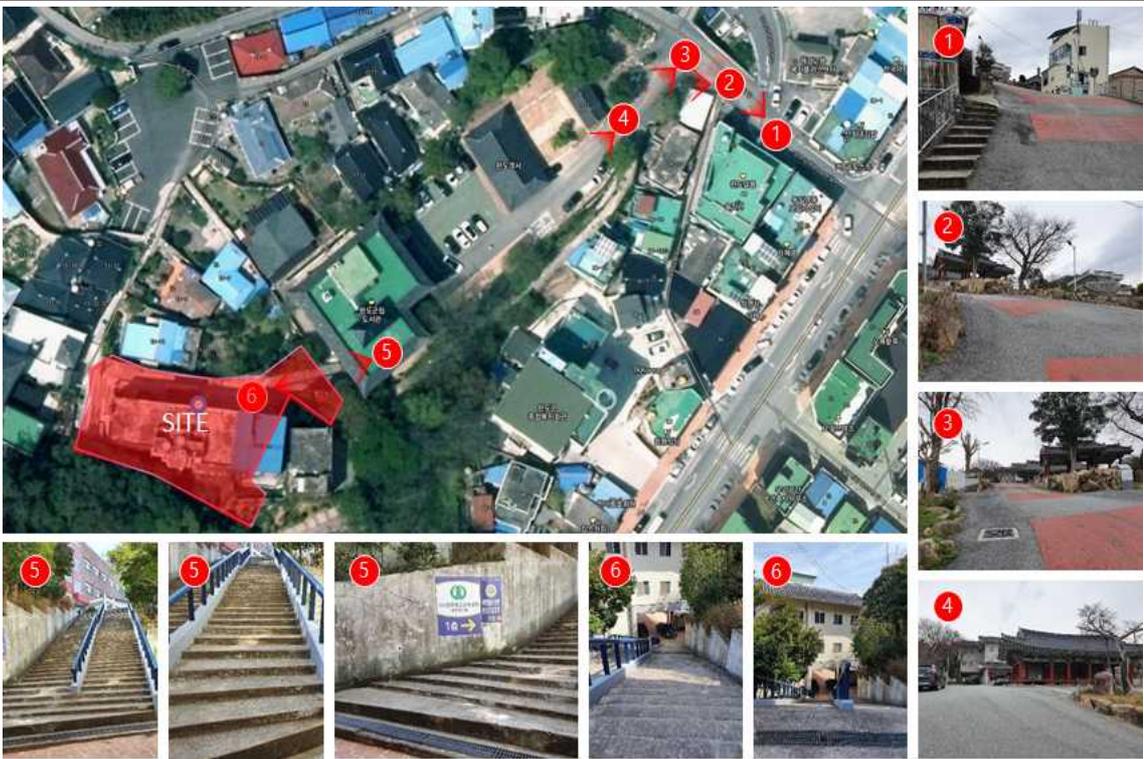
-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경사지에 위치하여 장애인 및 아동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.
- 1번 진입로를 통해서만 휠체어·유모차 진입 가능하나, 가장 좁은 진입로의 폭이 1.3m이고 심하게 경사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.
- 2번 진입로는 군립도서관 계단을 통한 진입로로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마모가 심하다.
- 3번 진입로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의 산책로로 도보 진입만 가능하다.
- 주차장은 1번·2번·3번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다.
- 1번·3번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 주차대수가 넉넉하고, 2번 주차장은 도서관 주차장으로 도서관 사용자들이 많아 사용이 거의 불가하다.



1번 진입로



2번 진입로



3번 진입로



1.4. 관광자원

(1) 완도타워



- 위치 :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0
- 2008년 9월에 준공된 완도타워는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의 명소이다.
- 소정원에는 전망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완도전경이 한눈에 보이고, 바다 위 돛대형태의 막구조 파고라를 설치하여 청해진의 지역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.

(2) 청해진 유적지



- 위치 :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787
- 장도 : 장좌리 앞 바다에 전복을 얹어놓은 듯 둥글넓적한 섬, 일명 장군섬
- 마을에서 장도까지의 거리는 약 180m로 하루 두 차례씩 썰물 때 걸어갈 수 있다.
- 물이 빠졌을 때는 청해진을 방비하기 위해 굵은 통나무를 섬 둘레에 박아놓았던 목책의 흔적이 드러난다.

(3) 장보고기념관





- 위치 :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
  - 장보고기념관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8년 2월 29일에 개관했다.
  - 1층 중앙홀에는 장보고무역선이 전시되어 있고, 2층 상설 전시장에는 장보고의 유적과 무역활동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.
- (4) 완도수목원



- 위치 :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56
- 규모 : 2,033ha 면적에 산림박물관, 아열대온실, 환경교육관,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이 곳에는 난대성 목·초본 등 희귀성식물 770여종이 자생하고 있다.
- 아열대·온대 교차지에 천영 난대림과 자연이 어우러져 산림교육·전시·연구가 가능한 공간이다.

## 1.6. 주민 설문조사 결과

항 목	내 용
구 완도문화원 재생	○위험지역의 변화 필요,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신설, 주차장 마련 요청
치유/문화 플랫폼	○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치유의 공간 필요 ○섬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필요
주민휴식공간	○주민 커뮤니티와 카페 조성 : 주민들의 소득 수입원으로 활용 ○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·힐링·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 마련 필요 ○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전시공간 필요

## 2. 건축계획

### 2.1. 현황여건 분석

- (1) 완도문화원의 신축이전으로 (구)완도문화원은 기피된 폐시설로 변이
- (2) 원도심지역은 좁고 계단형 골목이 많아 어르신들의 불편과 위험 초래
- (3) 완도군 내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장소가 전무한 상황
- (4) 수년 동안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상태

### 2.2. 조성 계획

#### (1) 일반사항

- 치유/문화 청소년 플랫폼
  - 주민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만큼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디자인 추구
  - 청소년 공간과 주민이용 공간 조닝을 분리하고, 주민과 청소년의 출입 동선을 가능한 분리하며, 합리적인 동선 추구
  - 대상지가 주위 시설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북측의 바다조망이 뛰어나며, 남측으로는 산과 맞닿아있어 자연경관요소를 충분히 활용한 공간으로 구성
  - 제공된 사업계획서의 진입로 배치계획을 참고하여 현실성 있는 진입 방법을 제시하되, 제시된 진입로 외에도 추가적인 제안이 가능
  - 진입로 계획 시 실용적이면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,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
- 꿈바라기 별빛 공원
  - 기 조성된 산책로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계획

(2) 용도별 면적표

세부시설		산출근거	면적(㎡)	비고
보일러실			73.31	
청소년 힐링센터	청소년 감성 치유실-1	16.5㎡ 이상	54.72	「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」 상담실 면적 참고
	청소년 감성 치유실-2	16.5㎡ 이상		
	청소년 감성 치유실-3	16.5㎡ 이상		
	대기실	4명×2.5㎡	13.31	
	사무실	14명×7㎡	98.74	청사관리규정 일반직원 집무면적 참고
창고			3.42	
청소년 감성 놀이터	청소년 치유 놀이터	33㎡ 이상	38.21	「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」 참고
	청소년 행복 놀이터	33㎡ 이상	40.92	
	사무실	3명×7㎡	22.82	청사관리규정 일반직원 집무면적 참고
감성 문화 놀이터		30명×2㎡	67.43	다목적실
창고			17.91	
주민 사랑방	주민협의체 사무실	3명×7㎡	22.82	청사관리규정 일반직원 집무면적 참고
	주민 회의실	12명×2.5㎡	38.21	
	주민 커뮤니티	20명×2.5㎡	57.13	
	북카페	18명×5㎡	96.55	
작가 레지던스			257.16	별관, 최소 12개실
루프탑				
화장실/공용공간(복도/계단)			430.26	
<b>면적계</b>			<b>1337.75</b>	

※면적은 전체연면적의 ±5% 범위 내 조정가능하며, 각 층별 배치는 제안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가능

(3) 주요 실별 고려사항

- 청소년 힐링 센터 : 완도의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심리치료 공간으로,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실 (3개소 이상)과 상담대기실, 상담센터 사무실 등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
- 청소년 감성 놀이터 : 완도의 청소년과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간으로, 교육프로그램 진행 또는 집단상담 및 치료가 가능한 공간(2개소)으로 계획하며, 공간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여 구성
- 감성 문화 놀이터 :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인포메이션의 역할과 동시에 야외무대와 연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,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포함하여 구성
- 주민사랑방 : 주민 및 관광객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간으로, 주민협의체 사무실과 주민회의실, 주민커뮤니티, 북카페를 포함하여 구성하며, 회의실과 커뮤니티는 문화교육프로그램 또는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
- 옥상 야외테라스 : 북카페와 연계한 루프탑 카페로 계획
- 야외 공연장 :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
- 꿈바라기 별빛공원 : (구)완도문화원 남측에 기 조성되어있는 산책로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을 계획하여, 야간에도 청소년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
- 작가 레지던스 : (구)완도문화원의 별관은 작가들을 위한 숙소로 구성하며, 각 실은 화장실과 간단한 부엌을 포함하여 계획

### 2.3 운영관리계획

- (1) 관리주체 : 주민사랑방시설은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며, 청소년 힐링·감성 센터는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
- (2) 관리방안 : 청소년 힐링·감성 센터는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자원을 활용하며, 주민사랑방시설은 북카페 사업 수익으로 확보

### 2.4. 건축관련 법규 검토

- (1) 「건축법」 과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을 준용

구분	법규	규제사항	검토
구조안전확인	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	○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대상임	건축인허가 및 실시설계 시 검토필요
에너지 절약계획서	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	○연면적 500㎡이상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(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EPI 74 점 이상)	건축인허가 및 실시설계 시 반영필요
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	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	○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의무대상은 아니나, 1등급 이상 인증 획득 계획	계획에 반영(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시 재검토 필요)
주차장 설치관련	주차장법 시행령 완도군 주차장 조례	○노유자시설 시설면적 300㎡당 1대 이상 설치 ○1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㎡당 1대 이상 설치	지침서에 제시된 진입로(15P)의 주차장과 연계하여 검토
BF 인증 관련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에 관한 규칙	○BF인증 의무대상은 아니나, BF인증 획득 계획	계획에 반영(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시 재검토 필요)

## 3. 건축설계 지침

### 3.1 계획의 기본방향

#### (1) 일반사항

-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,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 되어야 한다.
-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 구성 및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, 친환경 재료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.
-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(예정공사비)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, 설치 등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- 건축 및 실내 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(Universal Design)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.
-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, 부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 환경·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.
-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,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, 재해·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.
- 기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.

## (2) 경관계획

- 건축물 마감재의 재질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건축재료의 조건은 내구성, 시공성, 미관성, 경제성,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.
- 바다에 면한 지역이므로 풍해, 설해, 염해, 홍수에 대한 검토와, 염해를 고려한 마감재 및 조경 수종 선정이 필요하다.
- 대지 내의 외부공간과 대지를 둘러싼 인접 대지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설비차폐 등을 통해 주변 경관 저하를 최소화한다.

## 3.2. 설계 시 고려사항

### (1) 평면계획

-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배치가 필요한 실, 이격이 필요한 실에 대한 통합 조닝과 동선을 분리한다.
- 전체 연면적, 높이제한, 공간 활용계획 등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창의적인 안을 제시한다.
- 외부공간 조성 시 내부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고, 시설 사용자를 위한 휴게공간 및 지역민 활용공간 등을 다양하게 확보한다.
-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계획 및 빌트인 가구 적극 활용하여 수납 확보한다.
- 야외공간에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야외 공연 무대 시설을 설치한다.
- 제시한 사업범위내에서 공간별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,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
### (2) 입면계획

- 사용자(지역주민 및 청소년) 및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임을 고려하여,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하며, 주변과 조화되고 편안한 분위기의 입면디자인을 제시한다.
- 입면적 대비 적절한 창호비율로 계획하고,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해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염해방지를 위한 마감재를 사용한다.

### (3) 단면계획

-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의 진입로는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 마감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.

### (4) 범죄예방계획 (CPTED :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설계기법)

-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, 조경, 조명, 안내판 등을 사용한다.
-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.
-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.
-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경을 식재한다.
-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 눈부심 방지등을 설치하고, 야간에 10미터 거리에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한다.

(5) 기타

- 기존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아, 계획 시 주차장에서 건물까지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보행로를 계획하며 보행안전을 확보한다.
- 대상 건물의 남측에 위치한 산책로(완도읍 군내리 855번지 내 충혼탑까지 가는 계단 산책로 주변)의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계획을 통해 지역의 관광콘텐츠 제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한다.
- 구조안전정밀진단보고서를 참고하여, 시설 철거 및 재배치 등으로 인한 하중변경 발생 시 구조안전성 및 내진성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구조계획을 한다.
- 환기설비·환기창 확보 및 채광창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한다.
-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,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.
-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 보수를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물 주요부분에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다.
- 사용자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**불연재료 사용**을 원칙으로 하고, 인테리어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소방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맞도록 방염처리한다.
-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, 내구성, 내화성, 내후성, 내식성, 내오염성,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하고,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**친환경 재료**를 선정하도록 한다.
-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문객들의 이동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.

## 4. 심사기준

### 4.1.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

(1) 평가항목 및 분야별 배점

평가항목	배 점	세 부 평 가 기 준
배치 계획	20	○배치 및 토지 활용도 ○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○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
공간 계획	30	○내·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○공간 이용의 효율성 ○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
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	30	○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○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○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
기술 계획	15	○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○비용 절감 등 경제성 ○구조의 보강 및 공법 등의 적절성
기타	5	○공공성 제고방안,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

(2) 실격 및 감점 기준

위반내용	실격 및 감점기준	감점한도
○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	실격(심사제외)	
○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(단, 제안서 15부 중 1부는 제외)		
○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 (직·간접적인 청탁, 압력 포함)를 할 때		
○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		
○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, 통화하여 공모안을 설명을 한 경우		
○공모안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한 경우		
○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또는 타인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		
○상기 실격기준 외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		
○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	0.5점/항목 당	3점
○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	0.5점/쪽 당	3점
○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형식 위반 시	0.5점/항목 당	3점
○제출부수 부족 또는 초과 시	0.5점/부수 당	3점

5. 심사방법

5.1. 심사방법

- (1)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.
- (2) 심사위원회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(3)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(4)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.
- (5)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,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,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- (6) 발주기관 등(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)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.
- (7)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제안서가 5개 미만일 때는 당선작 또는 우수작까지만 선정할 수 있다.
- (8) 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(9) 공모 작품 수에 따라 심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
5.2. 실격기준

-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

-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, 번호,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
-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
- 직·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
-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
-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
-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, 휴업, 폐업,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-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

### 5.3. 불이익 처분방법

- (1)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,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,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.
- (2)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,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## 6. 제공자료

### 6.1. 유의사항

- (1) 제공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  - (2)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.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, 공모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  - (3) 본 제공 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이를 보정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.
  - (4) 목록
    - 기본자료
      - 1-1. 공모지침서 / 1-2. 과업내용서 / 1-3. 사업계획서 / 1-4. 서식
    - CAD 도면
      - 2-1. 현황측량도(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포함) / 2-2. 현황도면
    - 참고자료
      - 3-1. 완도군 관리계획 / 3-2. 완도군 경관계획 / 3-3. 구조정밀안전진단보고서
- ※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.